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설명서

본 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서류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임을 안내드립니다.

상품 개요

상품제공기관	상품명	가입대상
미래에셋생명보험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퇴직연금 가입 기업(DB) 또는 개인(DC/IRP)

상품 내용

구분	내용
상품구조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이율보증형 상품의 만기는 연단위(1년, 2년, 3년, 5년) 및 일단위(만기지정식)로 구분됩니다.
적용이율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또한 이율보증형의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미래에셋생명보험 홈페이지(사업자공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상품의 만기(이율보증기간) 경과 전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중도해지이율: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
특별중도해지	약관에서 정하는 아래의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1.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이자(수익) 지급시기	만기 일시지급식: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이자 지급
만기재설정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율보증기간 만기일 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접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사항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예금자보호	DC /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급사유 발생시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지급기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민원/분쟁 발생시	사세한 상품문의 또는 상품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https://life.miraeasset.com), 고객센터(1588-022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 가능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